

## 재난 · 위기단계별 대응방안

### 1. 풍수해 · 산사태(자연재난)

#### 1.1. 위기경보 기준

가. 풍수해 특보 기준(「기상법 시행령」 별표 1 적용)

구분	주의보	경보
태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,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풍(또는 풍랑) 경보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</li> <li>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</li> <li>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</li> </ul> </li> </ul>
호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</li> </ul>
폭풍해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천문조(조수간만의 차)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(발표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)</li> </ul>	
대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4시간 내려 쌓인 눈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(다만, 산지의 경우 30cm 이상 예상될 때)</li> </ul>

나. 산사태 위기경보 기준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적용)

구분	판단기준	조치기준
관심 (Blu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사태 빈발 시기,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지진 규모 4.0~4.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관리자원 정비</li> <li>비상연락망, 대피장소 점검</li> </ul>
주의 (Yellow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li>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%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발생한 경우</li> <li>지진 규모 4.5 ~ 4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산통제</li> <li>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</li> <li>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</li> <li>주민대피 명령</li> </ul>
경계 (Orang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·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</li> <li>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%이상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%이상에서 발생 시</li> <li>지진 규모 5.0 ~ 5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</li> </ul>	
심각 (Re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때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</li> <li>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% 이상에서 발생 시</li> <li>지진 규모 6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</li> <li>피해대책 마련</li> </ul>

## 1.2 대응 요령

### 가. 기상 상황 파악 및 주시

- (1) 태풍강도, 예상경로, 집중호우 전망 등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파악

태풍 정보 예시

일 시	중심위치		중심기압 (hPa)	최대풍속 (m/s)		강풍반경(km) (예외반경)	강도	크기	진행 방향	이동 속도 (km/h)	70% 확률 반경 (km)
	위도 (N)	경도 (E)		초속 (m/s)	시속 (m/s)						
8월 9일 9시 현재	25.7	125.6	990	24	86	200 (북서 약 150)	약	소형	북북동	27	
8월 10일 9시 예상	30.3	125.6	985	27	97	230 (북서 약 200)	중	소형	북	22	150
8월 11일 9시 예상	33.8	126.0	990	24	86	200 (북동 약 150)	약	소형	북	17	250
8월 12일 9시 예상	37.4	130.4	995	20	72	150 (남서 약 120)	약	소형	북동	24	400

### 나. 단계별 조치사항

- (1) 풍수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숙지 및 대응 필요

풍수해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

단계	조치 사항
관심 (Blu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시활동 강화</li> <li>안전실태 점검(산사태위험지역, 인명피해우려지역, 재난예경보시설, 각종 방재물자 등)</li> <li>자연재난 대책, 기상특보에 따른 이용객 통제 계획, 야영객 대피계획, 인명피해 예방 및 구조활동 계획 점검</li> <li>협조체계 점검(타부처, 유관기관 재난대응 관련 기관 사전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점검)</li> <li>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수해복구공사 및 공사현장 사전 대비</li> </ul>
주의 (Yellow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 실시, 정보공유 활동 강화,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</li> <li>야영장, 숲길 등 폐쇄</li> <li>현장 대응상황 및 재난상황 현황 보고</li> </ul>
경계 (Orang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난방송 및 기상현황 모니터링, 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,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</li> <li>야영장, 숲길 등 폐쇄</li> </ul>
심각 (Re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긴급 대응계획 점검 및 시행, 상황판단회의 결정사항 이행,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가동</li> <li>재난상황 및 대응현황 보고, 응급복구 및 지원계획 수립</li> </ul>

- (2) 풍수해는 산사태, 집중호우, 바람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대응 필요

### 풍수해 발생에 따른 기관별 역할

기관	임무 및 역할
산 립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강화</li> <li>• 태풍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전파</li> <li>• 상황판단회의 개최(필요시)</li> <li>•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점검</li> <li>•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</li> <li>• 재난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시사항 전달</li> </ul>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 방 자 치 단 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강화</li> <li>• “경계” 위기경보 전파 및 기상상황, 산사태예측정보 등 모니터링</li> <li>• 숲속야영장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점검</li> <li>• 주요간부 재난상황 점검 및 필요한 지시사항 전달</li> <li>•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보고(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, 지방자치단체 → 산림청)</li> <li>• 상황판단회의 개최(필요시)</li> </ul>
숲 속 야 영 장 운 영 · 관 리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휴양시설물 피해상황 점검 및 피해우려지역 점검 강화</li> <li>• 태풍·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</li> <li>• 숲속야영장 비상근무 강화</li> <li>• 이용객(예약자 포함)에게 상황전파 및 추가입장 통제</li> <li>• 대피소 사전점검</li> <li>• 피해발생 시 피해상황보고(숲속야영장→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, 지방자치단체)</li> </ul>

다. 풍수해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

- (1) 풍수해는 일반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의미하나,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가 가중됨
- (2) 각종 시설의 풍수해 유형별 점검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

풍수해에 종류별 점검 대상시설

구분	집중호우	강풍(태풍)	혹서	한파	낙뢰
건축	V	V	V	V	
토목	V	V	-	-	-
전기통신	V	V	V	V	V
소방	-	-	-	V	V
기계설비	V	-	V	V	V
숲길, 임도	V	V	V	V	V
체육시설	V	V	V	V	V
숲속활동시설	V	V	V	V	V
야영시설	V	V	V	V	V
물놀이시설	V	V	V	-	V

라. 집중호우 및 강풍(태풍)

- (1) 집중호우 및 강풍은 대부분 여름철 태풍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, 집중호우는 시설물의 수해, 강풍은 시설물의 탈락으로 인해 피해 유발
- (2) 숲속야영장에서 건축물 등 일반시설물은 폭우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숲체험시설은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전 점검 필요

집중호우 및 강풍(태풍)에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

시설	점검사항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내외부 재료 및 시설의 고정 점검</li> <li>• 비, 물이 새거나 습기가 발생 점검</li> <li>• 환기구의 점검</li> <li>• 출입구 및 계단의 물고임, 미끄러운 곳 점검</li> <li>• 창호의 기능 점검</li> </ul>
토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대 및 건축물, 도로 등 주변의 배수시설 점검</li> <li>• 절토 사면 및 상부 뜬돌, 나무 등 점검</li> <li>• 옹벽,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 점검</li> <li>• 사방댐 및 계류 접근, 위험 장애요소 점검</li> </ul>
전기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내 빗물유입 및 습기발생 점검</li> <li>• 외부 수목에 의한 통신시설 파손 점검</li> <li>• 통신기능 유지 점검</li> </ul>
소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상점검</li> </ul>
기계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펌프류 작동 및 소모품 점검</li> </ul>
숲길, 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숲길노면 배수시설 점검</li> <li>• 계류 횡단 위험요소 점검</li> <li>• 이용자 통제(확인 완료시까지)</li> </ul>
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</li> <li>• 주변 배수시설 점검</li> <li>• 이용자 통제(확인 완료시까지)</li> </ul>
숲속활동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</li> <li>• 주변 배수시설 점검</li> <li>• 이용자 통제(확인 완료 시까지)</li> </ul>
야영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현황 파악</li> <li>• 계곡부 범람 우려 및 위험성 점검</li> <li>• 이용자 통제</li> <li>• 대피소 확보</li> </ul>
물놀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폐쇄</li> </ul>

다. 혹서, 폭염

- (1) 극한의 고온은 외부활동에 있어서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

- (2) 건축을 포함한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냉방 장치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재 및 전기 등의 위험사고 발생할 수 있음
- (3)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℃ 이상이 2일 이상일 경우, 폭염경보는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
- (4) 시설물은 열악한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

혹서 및 폭염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

시설	점검사항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단열 성능 점검(창호)</li> <li>• 건축물 출입구 및 계단 물고임, 미끄러움 점검</li> <li>• 복도 및 출입구 적재물 점검</li> </ul>
토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상점검</li> </ul>
전기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도한 전기사용 모니터링</li> <li>• 배분전함 이물질 유입 점검</li> <li>• 통신기능 유지 점검</li> </ul>
소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화기구 점검</li> <li>• 감지부 기능유지 점검</li> </ul>
기계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열기구 점검(미인가 전열기구)</li> <li>• 전기사용량 점검</li> <li>• 에어컨실외기 점검</li> </ul>
숲길, 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통제(일기예보)</li> </ul>
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통제(일기예보)</li> <li>•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</li> </ul>
숲속활동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프로그램 운용 통제</li> <li>•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</li> </ul>
야영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현황파악</li> <li>• 냉방 장치 적합성 점검</li> <li>• 전기사용 방법</li> </ul>
물놀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이용</li> <li>•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</li> </ul>

## 라. 대설 및 한파

- (1) 대설은 한파와 동반하여 피해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이며, 고립 및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
- (2) 대표적인 안전관리 사항은 이동 동선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, 전기/통신 차단에 따른 대비, 외부접근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며, 각 시설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음

대설 및 한파에 따른 시설별 점검 사항

시설	점검사항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단열 성능 점검(창호)</li> <li>• 건축물 출입구 및 계단 빙판, 미끄러움 점검</li> <li>• 지붕의 침하 및 건축물 주변 수목 도복</li> </ul>
토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외부 진입로 제설작업</li> <li>• 제설재 및 장비의 확보</li> </ul>
전기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도한 전기사용 모니터링</li> <li>• 통신기능 유지 점검</li> </ul>
소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화기구 점검</li> <li>• 감지부 기능유지 점검</li> </ul>
기계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열기구 점검(미인가 전열기구)</li> <li>• 난방장치 기능 점검</li> <li>• 수도, 오수정화시설의 동파</li> <li>• 배기구의 연결상태 및 가스누출 점검</li> </ul>
숲길, 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통제</li> <li>• 이용자 주요 동선 제설 (수목피해 우려지역 제설재 사용금지)</li> </ul>
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통제</li> </ul>
숲속활동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프로그램 운용 통제</li> </ul>
야영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자 현황과악</li> <li>• 냉난방 장치 적합성 점검</li> <li>• 소방용수 비치</li> </ul>
물놀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이용</li> <li>• 응급처치 보관함 점검</li> </ul>

## 1.3 기타 사항

- 가. 풍수해 및 산사태 관련 위기경보 기준, 대응 요령, 복구 등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의 “풍수해, 산사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”을 우선 적용

## 2. 산불 및 화재(사회재난)

### 2.1. 위기경보 기준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9 적용)

구분	판단 기준	주요활동	비상단계
관심 (Blu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「주의」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</li> </ul>	경후 감시활동	사전 대비단계
주의 (Yellow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%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	협조체제 가동	산불방지 활동 강화단계
경계 (Orang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%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	대응태세 강화	중수분 준비단계
심각 (Re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%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	총력대응	중수분 가동단계

\* 산불위험지수 :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의해 산정되고 산림청장에 의해 공표

\* 대형산불 :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㎡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

### 2.2. 대응 요령

#### 가. 산불발생 인지 및 예보시스템 주시

- (1) 숲속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신고 및 비상연락,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
- (2)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는 현재 산불위험지수, 산불위험등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, 산불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확보 필요

#### 나. 대응 인력 및 자원의 준비

- (1) 산불이 확인된 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산불 대응 인력 및 가용 자원의 신속한 확인 필요
- (2) 또한 진화를 위한 부대시설의 확인과 소화기, 소화전, 방화용수, 대피소 등의 기능 점검 필요

#### 다. 이용자 현황 파악 및 대피

- (1) 산불이 발생하여 숲속야영장 근처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객에게 대피를 지시(방송활용)하며, 이때 대피경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함

- (2) 또한, 대피 전후에 대한 인원 파악을 실시하며, 부상자 발생 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구조대에 인계
- (3) 산불 확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며, 이용자의 대피 여부, 대피 준비 등의 신속한 추진 필요

라. 산불 피해 취약지역의 점검

- (1) 산불의 진행 방향과 주변 수목(연료)과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
- (2) 가스, 전기, 기계설비, 방송 통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 실시

산불발생 시 위기단계별 대응 방안

구 분	대응방안	대응시간
○ 산불, 화재상황 접수 및 신고	○ 산불, 화재발생 신고 및 접수 - 장소, 상황, 입장객 수 등 ○ 입장객 현황 및 대피상황 점검 ○ 산불, 화재발생 보고 및 전파 ○ 산불, 화재진행상황 파악	10분
○ 초동 조치	○ 인명검색, 구조활동, 피난유도 최우선 ○ 가용 진화자원 파악 및 투입 (산불, 화재현장 여건 파악) ○ 화재유형별로 유관기관 통보 - 전기·가스안전공사 등	10분
○ 진화상황 보고	○ 입장객 대피결과 보고 ○ 산불, 화재진행 및 진화상황 보고	
○ 완료 조치	○ 소규모 : 상황종료 및 복구 대규모 : 현장대책본부 가동 ○ 입장객 및 시설물 피해상황보고	

### 3. 기타 재해

#### 3.1. 전기 사고

가. 폭우로 인한 건물 침수가 예상될 경우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를 열어 전기 공급을 차단

\*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감전 사고에 유의(절연장갑 등 착용 필요)

나.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김

#### 3.2. 가스 사고

##### 3.2.1. 가스 누출 시 조치사항

가.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 내어야 함

\* 이때 선풍기, 진공청소기 등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 금지(조작 시 스파크로 가스가 점화될 수 있음)

나.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

다. 인근에 화재 발생 시 가스 기구의 콕을 잠근 후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잠궈 주도록 함

라.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재난상황실에 신고해 사고 전파

마. 필요 시 이용자들을 신속히 발생지역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사고의 바람 방향 반대 방향으로 대피

##### 3.2.2.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

가. 가스를 대량 흡입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, 산소호흡 등을 실시

나. 피부에 묻어 동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듯해지도록 해야 하며,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냉수 등으로 식히고 병원으로 후송

#### 3.3. 등산객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

가. 조난 및 안전사고 즉시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협조요청

나. 조난자를 수색할 시에는 2명 이상이 1조를 이루도록 조치

- 다. 수색조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두꺼운 점퍼 및 응급약품 휴대
- 라.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
- 마. 상황 종료 시 상황 종료 보고

### 3.4. 지진 위기 시 조치사항

- 가. 진동이 발생하는 동안,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방송을 실시하며 안전한 곳에서 신체 보호
- 나. 진동이 멈춘 후, 자진으로 인한 화재, 폭발, 붕괴에 주의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해 둔 지진대피소로 이용객 및 직원 대피
- 다.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, 가스, 전기, 통신 등 라이프라인 차단 및 모든 인원의 대피에 총력
- 라.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

### 3.5. 감염병 위기 시 예방 및 대응

- 가. 감염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를 지정·배치하여 책임성 부여(모든 출입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, 모든 출입자 전자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등)
- 나. 질병관리청이 제시하는 감염병 종류별 대응 지침에 근거한 증상 의심자 및 환자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 및 전 직원에게 알리고, 개인 위생 철저 등 안내 방송이나 문자 발송
- 다.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) 또는 관할 보건소(☎지역번호+120)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
- 라.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독 철저